

◆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- 「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월 21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
-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·유지·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제정 2005. 8. 4 법률 제7665호, 시행일 2006. 1. 1)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, 대부·매각·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조사항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- 사용·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방법을 정함(안 제 11조)
-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-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원칙과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 내지 제17조)

-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, 사용 · 수익허가의 제한, 위탁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
(안 제18조 내지 22조)
- 잡종재산의 대부시 대부요율, 건물대부료 산출기준,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,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, 대부료의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24조 내지 제37조)
- 잡종재산의 매각시 대금의 분할납부방법,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38조 내지 제40조)
-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(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)으로 정함
(안 제41조)
-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42조 내지 제44조)

-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, 청사부지,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등의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45조 내지 제48조)
- 관사의 구분, 관사 운영비의 부담 등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9조 내지 제59조)
- 변상금의 부과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1조 및 제62조)
-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3조)
- 합필 및 공유토지의 분필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64조 및 제65조)

【 검토결과 】

-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· 유지 ·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
-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제정 2005. 8. 4 법률 제 7665호, 시행일 2006. 1. 1)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· 수익허가, 대부 · 매각 ·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